

2009년 지방세정의 운영방향

이 보 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I. 머리말

어느 해 보다도 추운 새해를 맞이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유가와 미국발 금융악재로 인한 극심한 불경기의 여파가 여전히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지방세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지방세정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납세자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납세자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동을 통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납세자 편의의 세정이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금년에는 극심한 불경기에 얼어붙은 경제활동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자금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탄력적 세정운용, 고지서 송달을 활용한 저소득층 자녀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과표제도의 합리적 개선, 고객지향의 납세지원서비스 기반 구축,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등 지방세수를 꾸준히 확충해 나감으로써 안정적 세정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II. 2008년 성과와 반성

1. 지방세정의 주요 성과

1) 민생안정 및 경제살리기 적극 지원

IMF 이후 유례없는 경제불황에 따라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동시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분야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일률적인 세금감면 등 단순한 지방세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각종 제도와 조치들이 향후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얼어붙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하여 주택의 거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율을 50%(2%→1%) 경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조치는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그 시행효과를 보아가며 6월~1년정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조치로 지난해 말까지 8,979세대에 약 537억원이 지원되어 '08년 10월 현재 미분양 주택이 전월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01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방조종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됨에 따라 서민 생계형이 주를 이루는 전방조종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났다. 따라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 표준조례안을 마련, 전방조종자동차 소유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셋째, 에너지 절약, 서민생활 안정 및 수송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고유가극복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세제 지원대책 마련·추진하였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 및 농·어민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경유가격 상승분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주행세 표준세율을 인상하고,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이 조치는 초유의 고유가에 따른 긴급처방으로써 '08.7.1,부터 '09.6.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주행세율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하여 유류가격에는 중립을 유지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형 차종인 하이브리드카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취·등록세를 50% 감면하여 동종의 휘발유 차량과 유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토록 지원하였고, '09년 1만대 생산시 약 84억원 이상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2) 친시장 지방세 지원대책 역점 추진

지난해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등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중점 추진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종합 지원대책은 첫째,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제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해서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제 때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고, 둘째 과세관청이 실적위주의 과세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으며, 셋째 지방세법령의 체계가 복잡하고 난해하여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데 있었다.

지난해 추진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기업의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었다. 이로 인해 공장·사무실 등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하향조정되어 전체기업의 62%정도가 약 536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상권이 침체된 지역의 상가와 같이 시가보다 오히려 건물과표가 높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이를 조사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체조정권을 주고 불합리한 과표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는 Global-Standard에 걸맞는 지방세 과표체계로 개편해 나갈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실·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서면세무조사 제출서류를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현재 자치단체별로 각각 실시하는 세무조사방식을 광역권 단위로 묶어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기업들이 겪는 세무조사의 부담을 일부 덜게 하였다.

셋째, 중소기업이 주로 입주하고 있는 산업현장을 찾아가서 법령상 명시된 세제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나 법령을 잘 몰라서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현장 세무 컨설팅 활동을 전개하고, 전국 279개소에 달하는 산업단지에 「국세와 지방세 합동조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지방세 상담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도록 했다.

넷째,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확대·운영하고 법령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내용을 수록한 지방세 상담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지방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록 하였다. 특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이 현재 14,688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상담 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자체도 어려워서 외국투자기업이 느끼는 지방세 궁금증이 크기 때문에 KOTRA 등 경제단체와 협의하여 영어와 일본어판 지방세 사례집을 우선 발간하여 외국 투자기업에 배포하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담수요를 보아가면서 독일어판 등 다른 외국어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는 기업상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및 감정평가사회의 추천을 받아 세무사와 회계사 등 기업상담 자원봉사자 410명을 자치단체에 연결하여 기업에 대한 납세상담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자치단체와 세무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조로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여섯째, 지방세를 잘못 납부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특별기간(연2회)을 정하여 운영토록 했으며, 과오납금정리실적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한편, 자치단체 세입결산후 이를 공시토록 하여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3) 주택분 재산세제도 전면 개편

'08년도까지의 주택분 재산세 증가수준은 국민들의 정상적 소득증가율보다 훨씬 높아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매년 과표적용비율 5%p 인상으로 인해 전년대비 산출세액이 매년 10~50%이상 인상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상한 적용비율은 공시가격대별로 최고 5~10배까지 차이가 났으며, 특히 6억초과 주택의 경우 150% 상한 적용으로 인해 최대 50%까지 부과세액이 증가하여 납세자의 부담 가중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① 주택공시가격 3억~6억이하 구간의 격차율 완화를 위한 과표단계 확대(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②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이 최대한 일치(격차율 완화)되도록 하는 세율인하, ③ 주택공시가격의 60% 수준의 공정시장가액을 도입, ④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산세법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법정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을 최대한 일치시켜 비정상적인 재산세 구조가 정상화되는 등 납세자의 세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세 세수규모는 크게 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재산세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지방세 법규해석 민원처리체계 개선

지방세정의 책임성 및 납세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규해석민원의 자치단체 처리원칙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법규해석 민원처리체계를 확립하였다. 유권해석은 구체적 처분을 전체

로 하므로 자치단체 처리가 원칙이나, 민원인에게 우리부 해석을 받게 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유권해석 처리의무를 자치단체에 지우는 동시에 「지방세법 해석운영 매뉴얼」 발간·보급, 「법규해석민원 상담사례집」 발간·보급, 「법규해석 담당공무원 합동교육」 등 민원처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WeTax(지방세 인터넷 포털시스템)의 단순 사례정보 제공기능을 법령정보 및 법규해석 사례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지방세 One Call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하나의 전화번호(1577-5700)로 각 지자체 상담직원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지원 또한 동시에 추진하였다.

2. 반성 및 시사점

1) 경제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선제적인 지원역할 미흡

조세감면 등 효율적인 지방세 지원대책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합동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나 지방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위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선제적인 지원역할에는 한계를 노출해 왔다.

금융·실물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저소득층, 산업계 및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제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부응하지 못하는 지방세 제도 존치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조세환경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제때 정비하지 못한 지방세 제도가 고질적인 민원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제도는 존치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보이고 있다.

과표와 실거래가 간의 괴리, 면허세 과세체계의 복잡성, 기업환경을 고려 않는 세무조사 등 드러난 제도의 개선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제도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신속하게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제도개선 프로세스 정립 필요하다.

3) 납세자 눈높이에 비해 아직까지 취약한 지방세 운영시스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세정여건의 격차, 통일적 해석기준의 미비, 책임회피성 과세행정 등으로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세정 기반은 아직 정착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실물경제 침체로 '09년 지방세입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납세자와의 조세마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대한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치단체 스스로 세정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방세법령포털 구축 등 납세지원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Ⅲ. 2009년 지방세정 운영방향

1. 국민 세부담 완화 및 공평과세 기반 정립

1) 토지분 재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 연구

고유가,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촉발된 유래없는 불경기임을 감안, 국민 세부담 경감 및 과세 불형평 해소를 위하여 토지분 재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경우, 일부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개발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개발이익 기대에 따른 지가급등과 토지와 주택간 세부담 상한 차이(토지 150%, 주택 105~130%)에 따라 주택에 비하여 과도하게 재산세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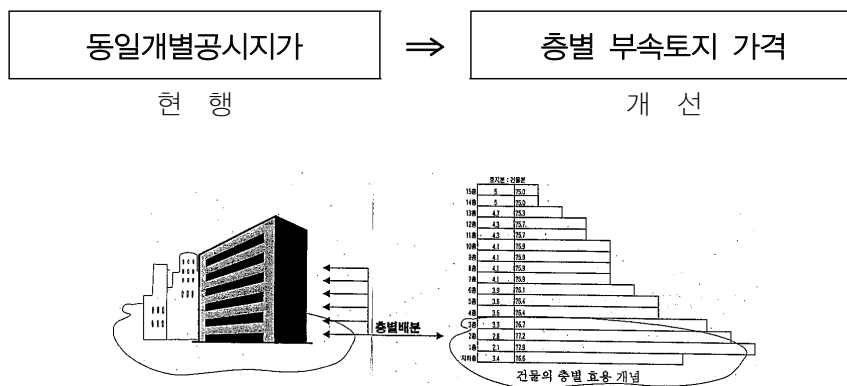
또한 종합부동산세 급증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변경 요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에만 부과되며, 분리과세 대상은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과세구분 변경 요구가 있어 왔다. 다만, 과세구분 변경요구의 정당성,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지방세 과표체계 개선

실거래와 괴리된 일부 과표가 존재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과표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등 지방세 과표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비주거용 건물 부속토지에 대해 각 층별 효용도에 따라 실거래 가격 차이를 반영하는 층별 부속토지가격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하층이나 고층의 경우 지상 1층과 실거래가격의 차이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속토지의 과세표준을 1층과 동일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과세불형평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층별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한 층별효용비율을 지역별·건물유형별로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층별로 시가에 근접한 과표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건물 층별 동일 개별공시지가 적용 ➡ 층별효용비율을 감안, 부속토지가격 차등 산정



아울러 현재 과세처분 전 과표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없어 사전적 권리구제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점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과세표준은 향후 세율을 곱하여 부과세액이 결정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그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등 불복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과세처분 후에야 불복절차를 개시함으로써 입을지도 모르는 납세자의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도입과는 별도로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높은 건물과표의 경우 지자체에서 적용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인하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시가변동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시가에 맞게 과표를 수시조정하여 현행 제도 내에서도 실거래가격이 최대한 반영된 과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가에 45~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시설물 과표를 현실화 하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11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다른 물건 소

유자와의 세부담 형평을 기하고 부족한 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 어느정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으로 경제활성화 지원

자금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방세정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경영활동 외에 세무문제로 곤란을 겪는 일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금애로를 겪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하여 탄력적인 세정운용을 할 예정이다. 종전 KIKO 가입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납기연장, 징수·채납처분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애로를 겪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성장동력 확충기업, 신규고용 창출기업,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납세협력비용 경감하여 세무조사 불편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 국민생활 공감 확산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위기 극복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금융·실물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산·서민층, 산업계 및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민 생활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국민 세부담을 조정할 예정이다. 서민층이 주로 취득하는 소형 화물차가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됨에 따라, 적용세율 상승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단계적 세율인상 방안에 대하여 세율 인상 폭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서민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레저 대중화 추세에 따라 고급선박의 취득세 중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기준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세액 대비 징수비용이 높은 세목의 납부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하나의 법인이어도 지점이 다른 경우 각 지점별로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법인 본점에서 지방세 인터넷 포털(WeTax)을 통하여 일괄납부하도록 개선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연중 수시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3. 고객지향의 납세지원 서비스 기반 구축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의의 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시간으로 지방세 정보를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접근성 및 현장성을 높이는 고객만족 세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공동이용 번호(1577-5700) 하나로 민원인이 해당지역 지방세 상담 공무원과 통화할 수 있는 One-Call 상담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세정부서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도 지방세 상담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법령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 법령, 판례·심판례, 질의해석 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앙 및 지자체간 세정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합동업무평가 등에 부실과세 방지시책 실적을 반영하고 지방 행·재정 시지표에 과오납 발생·환급율을 반영하고 공개함으로써 지자체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부실과세의 유형 및 프로세스 개선사례를 DB화하여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과는 별도로 개선된 민원처리체계의 정착을 위해 해석운영 매뉴얼을 정비하고 지자체 지방세 해석·상담공무원에 대한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줌으로써 자치단체의 세정운영 역량을 강화해줄 필요성이 있다.

4. 지방 세수의 차질없는 달성 및 균형성장

1) 지방세 성실납세 기반 조성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납세자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고질체납자 방지대책 마련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납세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하여 법원·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분야별 과세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유형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세목별·분야별 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기법과 그 매뉴얼을 발굴하여 보급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형적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예금·채권·공사대금·급여 등 체납자의 각종 재산에 대한 신속한 조회체계를 구축하여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질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반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시 금고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부여하여 성실납세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비과세·감면요건, 주민세 납세지 등 착오납부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납세안내자료 보급 및 세무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수도권 취·등록세 종과제도 검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수도권내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종과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억제효과에 비해 기업창업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그 속도와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IV. 맺음말

2008년 4/4분기의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은 IMF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예측되어 충격을 주고 있고, 일부 경제연구소에는 2009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어 금년도 경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가 처한 어려움이므로 다른 나라보다 먼저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선진국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정부도 이를 위하여 국정을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바꾸어 운영 중에 있고, 대통령께서 신년 연설로 지난 1월 2일 말씀하신 2009년 국정운영의 4대방향도 모두 경제위기의 조기탈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수 진작과 기업활동 의욕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화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 적극 추진되어야 하고, 모든 국민들의 고통분담이 요구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어 경제위기의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활기차게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